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220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2204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가소860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양상열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변론종결 2022. 5. 11.

판결선고 2022. 6. 8.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가소86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57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2020. 11. 9. 17: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IC 도로상에서 발생한 원고 피보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 피보험차량((차량번호 2 생략),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없다. 그런데 D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 30%, 피고 차량의 과실 70%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800,5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좌측 차로로 진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어 위험을 방지하고자 정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차량은 합류지점에 이르기 전 비상등 점등 없이 갑자기 도로 중간에 정차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D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판사 장래아